

◆ D-13 해고예고 일수 미달시 차일분에 해당되는 해고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?

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(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) 적어도 30일전에 그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,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음. 그러므로 30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다시 예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음.